안전사고에 관한 임원문책규정

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

2020.08.27.제정(규정 제1291호)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공단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임원의 안전관리 책무) 공단의 임원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,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·감독하여야 한다.
- 제4조(문책의 사유) 이사장은 「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」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·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을 별표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임원이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.
 - 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
 - 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
 - 3.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
 - 4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 재해 또는 사고
- 제5조(문책의 종류와 효과) 문책은 해임·연임제한·업무배제·기본연봉 감액·경고·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1. 해임
 - 2. 연임제한 (업무배제 병과)
 - 3. 업무배제 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,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.
 - 4. 기본연봉 감액: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(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)
 - 5. 경고 :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. (주의 2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)
 - 6. 주의 :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.
- **제6조(문책의 절차)** ① 이사장은 임원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.

- ② 인사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- ③ 문책양정, 인사위원회의 심의·표결, 항고,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, 문책처분의 집행, 문책의 시효,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및 인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사규정 중 징계 및 징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징계"는 "문책"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

관련법령		위반 의무	문책유형
		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, 고장(규칙 제9조 등) ② 안전시설 미비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21조 등) ③ 안전(방호)장치 미비, 부적절, 고장, 해제(규칙 제12조 등) ④ 작업지휘자·감시자 미배치, 부적절(규칙 제39조 등)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(규칙 제37조 등) ⑥ 대피조치 미흡, 부적절(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) ⑦ 공사기간 단축·공법변경 금지의무(법 제69조제1항·제2항)_도급인 ⑧ 설계변경·변경요청의무(법 제71조제3항 후단)_도급인	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
직영 및 도급	산안법	① 비상구·소화설비 미비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) ② 경보, 구호설비 미비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11조제4호 등) ③ 위험기계·기구 안전검사 미수검(규칙 제36조 등) ④ 작업계획·점검 미실시, 부적절(규칙 제38조제1항 등) ⑤ 작업방법 부적절(규칙 제38조제3항 등) ⑥ 작업시간·기간 불충분(규칙 제421조제1항 등) ⑦ 무자격자·미숙련자 작업배치(규칙 제318조 등) ⑧ 작업지시·신호 미실시, 부적절(규칙 제40조 등) ⑨ 작업장(위험장소) 출입·이동방법 부적절(규칙 제11조 등) ⑪ 작업설비 등 용도 외, 부적절 사용(규칙 제96조 등) ⑪ 작업절사 기간 연장의무(법 제70조제2항후단)_도급인 ⑪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(법 제64조제1항제5호)_도급인 ⑪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·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(법 제65조제1항)_도급인	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
		① 보호구 미지급, 부적절, 고장(규칙 제6조제2항 등)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, 부적절(규칙 제11조제5호 등) ③ 보호구 미착용, 성능 미달 보호구(규칙 제6조제3항 등) ④ 작업수칙·지시 위반(규칙 제436조 등) ⑤ 전도 방지 미조치(규칙 제3조 등)	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
발주	산안법	① 공사기간 단축·공법변경 금지의무(제69조 제1항·제2항) ② 설계변경의무(제71조제4항)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(제70조제1항)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(제68조제1항)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, 제공, 확인의무(제67조제1항)	연임제한 업무배제
	건진법	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	기본연봉 감액

관련법령	청	위반 의무	문책유형
		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	
건신	<u>·</u> 법령	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	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
	<u>년</u> 기 }업법	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	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경고
	<u>-</u> 기 업법	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(사업용·자가용)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(일반용)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	주의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
	月기술 리법	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·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,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	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
공시 소 공시	보통신 나업법 = 방 나업법 화재	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	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
	리법	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	해임